

자체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019. 5.



문화재청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3
2. 감사대상기관 .....	3
3. 감사중점 .....	3
4. 감사기간 및 인원 .....	3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용역 기성금 및 선금 지급 등 미흡 (기관주의) .....	5
2. 자문 수당 및 사례금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흡 (기관주의) .....	9
3.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 및 납부방법 처리 미흡 (기관주의) .....	11
4. 세종역사문화관 정원조성 설계변경 부적정 (기관주의) .....	14
5.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운용 미흡 (기관주의) .....	16
6. 유사 용역 추진 시 과업 중복 여부 검토 미흡 (시정) .....	18
7. 관사동 이전 건립사업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통보) .....	20
8. 영릉 참도에 강화 석모도 박석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진정성 확보 (모범사례) ..	22
9.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적극 운영으로 지역 문화유산 활성화에 기여 (모범사례) ..	23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목적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릉인 영릉(英陵)과 효종대왕과 인선왕후의 쌍릉인 영릉(寧陵)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이전 자체종합감사는 2016.4.11.부터 4.15.까지 5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감사중점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영·영릉 종합정비 및 관사동 건립 등 각종 공사 추진 실태, 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 적극행정 및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9.3.18.부터 3.22.까지 5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과 관련하여 2019.3.22.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을 청취하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

# 문 화 재 청

## 기 관 주 의

제 목      용역 기성금 및 선금 지급 등 미흡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 가. 용역 기성부분 완성 및 인수 없이 기성금 지급

기획재정부 예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와 제21조(인수),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에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성 전에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의 완성을 확인하고 인수 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전시영상 12편 및 정보영상 8편 제작을 위하여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 및 정보영상 제작 용역'을 (주)○○○○○○○○과 계약 (2016.4.20.~2016.10.22./535,294,910원)하고, 이후 3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1차 2016.11.22, 2차 2016.12.16, 3차 2017.2.28.)하였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성 전에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제작해야 할 각각의 영상별 공정률을 60%부터 95%까지 산정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하여 전체 기성률 86%에 대한 기성금을 관리소에 지급 요청(2016.12.28.)하였는데,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지급 요청 당시에 관리소에 제출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작 대상 영상 20편(전시 영상 12편, 정보영상 8편) 중 최종 완성된 영상은 없었다.

그러나, 관리소는 기성검사 시(2016.12.28.) 기성부분의 완성을 확인하고 영상물을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기성률 85%에 대한 기성금 455,000,000원<sup>1)</sup>을 지급하였다.

1) 실제 지급액은 선금 공제 후 227,500,340원

## 나. 선금 및 기성금 정산 미흡

기획재정부계약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위 기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아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선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text{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text{계약금액}]$$

---

관리소는 '가'의 해당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535,294,910원의 50%인 267,647,450원을 선금으로 지급(2016.5.9.)하였고, 이후 기성률 85%에 해당하는 455,000,670원을 기성금액으로 인정(2016.12.28.)하여 아래 선금정산액을 제외한 227,550,340원을 지급(2016.12.29.)하였다.

---

$$\begin{aligned}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text{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text{계약금액}] \\ 227,500,330\text{원} &= 267,647,450\text{원} \times [ 455,000,670\text{원} / 535,294,910\text{원} ] \end{aligned}$$

---

위 예규에 따라 관리소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용역 계약기간이 계약 체결 연도 다음 연도까지 이어 지므로, 연말에 선금 267,647,450원 중 선금정산액 227,550,330원을 제외한 40,097,120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반납받거나<sup>1)</sup>, 연말 기성금 지급 시 이를 같이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 187,353,22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납 받거나 정산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대금 40,147,12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

1) 지출원인행위금액 중 일부금액을 사고이월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아 세입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과오납으로 반납받거나 연말 기성금 지급 시 선금 잔액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표 1] 연말 선금 정산 및 기성금 산출 예시

구분	일자	산 출 식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선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2016.4.20.	①계약금 535,294,910원	
	2016.5.9.	②선금(50%) 535,294,910원×50%=267,647,450원	
	2016.12.26.	기성금 (85%)	③기성금액 (계약금×기성률) 535,294,910원×85%=455,000,670원
			④선금정산액 (선금×기성률) 267,647,450원×85%=227,500,330원
			⑥선금 잔액 반납액 (선금-선금 정산액) 267,647,450원-227,500,330 =(40,147,120원) ※미실시에 따른 초과지출분
⑥지급액 (기성금액-선금정산액) 455,000,670원-227,500,330원=227,500,340원			
기성금 지급 시  선금잔액을 함께 정산하는 지급안	2016.4.20.	①계약금 상동	
	2016.5.9.	②선금(50%) 상동	
	2016.12.26.	기성금 (85%)	③기성금액 (계약금×기성률) 상동
			④선금정산액 (선금×기성률) 상동
			⑤선금 잔액 반납액 (선금-선금 정산액) 상동
⑥지급액 (기성금액-선금정산액-선금 잔액 반납액) 455,000,670원-227,500,330원-40,147,120원 =187,353,220원			

한편, 관리소가 감사 대상기간 동안, 선금 지급 후 연말에 선금잔액을 반납받거나 정산하지 않고 이월한 계약 건은 위 해당 용역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세종대왕유적관리소가 계약 이후 이월한 사업 중 당해 연도 초과 기성금 지급 현황

계약일자	건 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완료일	초과지급 금액(천원)
2016-01-08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전면책임감리 용역(3차)	334,000	2017-02-28	24,853
2016-04-20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 및 정보영상 제작	535,000	2017-02-28	40,147
2017-08-11	세종대왕릉 진입부 교량 등 개선공사	675,000	2018-07-17	163,106
2017-12-29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공사(2단계) 2차	3,350,000	2019-04-30	108,368

#### 다. 선금 지급 후 계약 기간 연장 시 선금급보증서 연장 미흡

기획재정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에 따라 계약 담당공무원은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당해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선금 지급일 이전으로,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 및 정보영상 제작'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보증기간이 2016.5.9.부터 2016.12.21.까지인 선금보증서를 포함한 선금 지급 신청(2016.4.25.)을 받고,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2016.5.9.)하였다.

관리소는 선금 지급 이후에 3차에 걸쳐 계약 완료일을 연장(1차 2016.11.22, 2차 2016.12.16, 3차 2017.2.28.)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도록 하지 않아 지급한 선금에 대한 적정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관리소가 감사 대상기간 동안, 선금 지급 후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선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건은 위 해당 용역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선금 보증서 보증기간 미연장 계약 현황

계약일자	건 명	계약금액 (천원)	당초 계약완료일	최종 계약완료일
2016-01-08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전면책임감리 용역(3차)	334,000	2016-12-31	2017-02-28
2016-04-20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 및 정보영상 제작	535,000	2016-10-22	2017-02-28
2018-09-03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시·발굴 추가 조사	153,330	2018-12-02	2018-12-26

### 조치할 사항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기성부분의 완성을 확인하여 인수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고, 선금 지급 후 당해연도 말에 선금잔액을 반납받거나 정산하며, 선금 지급 후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보증기간이 연장된 선금 보증서를 제출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재 청

## 기 관 주 의

제 목 자문 수당 및 사례금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흡

관계기관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와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국가나 사업자 등이 5만원을 초과하는 강연료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하 '소규모 용역')에 대한 대가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100분의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데, 기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기타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규정되어 있는데, 소규모 용역에 대한 대가의 경우 기존에는 기타소득의 80%였으나, 2018.4.1.부터는 70%로, 2019.1.1.부터는 다시 60%로 감소하게 되어,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최저한 5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소규모 용역 대가가 기존 250,000원 초과에서, 166,666원으로, 다시 125,000원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나 사업자 등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규모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2018.4.1.부터 2018.12.31.까지 해당 금액이 20만원일 경우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식은 각각 아래 [표]와 같다.

[표 1] 소규모 용역 대가(20만원 기준)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식

관련 규정	계산식
○ 필요경비금액 = 기타소득금액 × 70%	200,000원 × 70% = 140,000원
○ 확정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 필요경비	200,000원 - 140,000원 = 60,000원
○ 원천징수 소득세 = 확정 기타소득 × 20%	60,000원 × 20% = 12,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2,000원 × 10% = 1,200원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업무 관련 자문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는 자문 수당을, 세종대왕 송모행사 등에 참여한 행사 참여자 등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4.1.부터 2018.12.31.까지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자문 수당 또는 사례금<sup>1)</sup>이 166,666원을 초과할 때,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아래 [표 2]와 같이 총 3건 25명에게 자문 수당 및 사례금 200,000원을 지급하면서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표 2]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자문수당 및 사례금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실시 내역

지급일자	건 명	지출금액(원)	수령인
2018-5-25	세종대왕 탄신 621돌 송모제전 행사 제관요원 사례금 지급	4,200,000	□□□ 등 21명
2018-5-25	세종대왕 탄신 621돌 송모제전 행사 수릉군 사례비 지급	600,000	△△△ 등 3명
2018-6-12	정비공사 관련 재실 철거 계획 자문수당 지급	200,000	▲▲▲
계	3건	5,000,000	

## 조치할 사항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문 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감사에서는 송모제전 행사 요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 아닌 제19호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문 화 재 청

## 기 관 주 의

제 목 하자보수보증금을 적용 및 납부방법 처리 미흡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 대가의 최종 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공종구분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 100분의 2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감사 대상기간의 공사계약 34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붙임> 표[1]과 같이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시설물 설치공사 등 7건은 공사 내용이 비슷함에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100분의 2부터 100분의 5까지 서로 다르게 적용하였고, <붙임> 표[2]과 같이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전기공사 등 5건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것보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과다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을 확인한 결과 <붙임> 표[3]과 같이 6건은 유가증권이 아닌 지급 각서로 제출받는 등,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일부 공사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과 납부방법을 미흡하게 처리하였다.

## 조치할 사항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공사내용에 맞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적용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사 관련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현황

[표1]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하자보수보증금률 보증금율 상이 현황

구분	공종	건 명	보증금액 (원)	보증 금율	납부 방법	비고
하자보증금율 상이	전시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시설물 설치공사	21,816,300	5%	보증서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수장고 조성공사	4,021,020	3%	보증서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상설전 시실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설치	622,710	3%	보증서	
	통신	효종 영릉 CCTV 합체 및 통신 공사	241,488	3%	보증서	
		영·영릉유적종합정비 정보통 신공사	3,681,833	2%	보증서	
	교량	세종대왕릉 진입부 교량 LC 강합성 거더 제작·설치	9,750,000	5%	보증서	
세종대왕릉 진입부 교량 등 개선공사		5,109,900	3%	보증서		

[표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하자보수보증금률 과다 적용 현황

구분	건 명	보증금액 (원)	실제적용 보증금율	관련법 기준요율	비고
하자보증금율 과다 적용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전기공사	38,029,950	5%	2%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소방공사	11,708,424	3%	2%	
	관리동(직원관사) 시설 보수 공사	361,250	5%	3%	
	상수도 배관 복구 공사	343,750	5%	3%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제습기 설치공사	999,000	5%	2%	
	왕의 숲길 출입문 정비공사	320,000	5%	2%	

[표3]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징구 현황

구분	건 명	보증금액 (원)	보증 금율	납부 방법	비고
하자보증금 각서 징구 현황	관리동(직원관사) 시설 보수 공사	361,250	5%	각서	
	자귀나무 지지대 등 정비사업	214,500	5%	각서	
	상수도 배관 복구 공사	343,750	5%	각서	
	경계휨스 이설 공사	98,000	2%	각서	
	종합경비시스템 UPS 낙뢰보호기 설치	415,800	3%	각서	
	왕의 숲길 출입문 정비공사	320,000	5%	각서	

# 문 화 재 청

## 기 관 주 의

제 목 세종역사문화관 정원조성 설계변경 부적정

관계기관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영·영릉 종합정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공사는 현재 ◇◇◇◇(주)과 계약하여 3차1)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입찰공고·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위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의 중정 및 출입구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정원조성 설계용역'2)을 시행하여, 감리단에 동 설계사항을 검토토록(2017.05.05.) 하였고, 감리단에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건축공사에 추가 변경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검토·회신(2017.05.31.)하였는데, 관리소는 해당 설계용역 결과물로 기본계획보고서, 도면, 내역서가 포함된 견적서(58,666,576원)를 납품받는 등 예정가격을

1) 총 공사부기금액 12,833,830,000원, 총 공사기간 2017.04.25.~2019.12.13.(3차까지, 4차는 미정), 계약상대자 ◇◇◇◇(주) 등  
2) 8,687,000원/2017.03.27.~2017.04.15./○○○○ ○○○○

구성하는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건축공사에 추가 변경계약 하는 것으로 승인(2017.06.07.)하였다.

한편, 정원조성 설계 도안은 설계용역 수행업체 대표가 저작권을 등록한 것으로,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인 ◇◇◇◇(주)은 정원조성 공사를 위하여 상기 설계용역 수행업체로부터 다시 견적서를 받아 계약(부가세 제외 53,000,000원/2017.06.07.~2017.06.17.)하여 공사를 수행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후원가검토조건 계약은 입찰 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하는 사항이나, 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정원조성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영·영릉 종합정비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도급자인 ◇◇◇◇(주)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변경계약 함으로써 ◇◇◇◇(주)이 저작권을 등록한 특정 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공사를 수행토록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재 청

## 기 관 주 의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운용 미흡

관계기관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는 4대 보험, 기타소득세, 국세환급금 등의 출납을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을 개설하여 활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규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산과 관계없이 국가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으로 국가소유가 아닌 현금을 의미하며 보관금, 복구비와 각종 보증금, 공탁금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을 운용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금, 복구비와 각종 보증금, 공탁금 등 출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출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현재 관리소의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잔액은 1,938,101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잔액 현황

발생일	발생금액(원)	발생사유	비 고
2017.11.01	800,000	매표소 환전금	2017.11.1. 이후 무료개방
2019.02.13.	10,000	부가세 환급금	
2019.03.19.	22,000	기타소득 및 주민세	
-	1,106,101	(출처 불분명)	
잔액	1,938,101		

위 내역 중 매표소 환전금 800,000원은 관리소가 능을 무료개방(2017.11.1.) 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으로 2018.12.31.까지 보관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관리소는 감사기간 현재(2019.3.21.)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1,106,101원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개설(2005.10.20.) 이후 입금 시점과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세입·세출외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치할 사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1,106,101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금, 복구비와 각종 보증금, 공탁금 등 출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출금을 관리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재 청

## 시 정 (감액)

제 목 유사 용역 추진 시 과업 중복 여부 검토 미흡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예정가격은 문화재청 고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데, 제5조(직접경비)에 유물정리비와 보고서 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시·발굴 추가 조사 용역'을 (재)○○○○○○○○○○과 계약(2018.9.3.~2018.12.2./153,330,000원)한 이후 계약기간을 1회 연장(2018.12.26.까지)하였다.

관리소는 용역 과업에 보고서 작성을 포함하여 계약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만료일(2018.12.26.)에 약식보고서와 준공정산서를 포함한 준공계를 관리소에 제출하면서, 정산하지 못한 29,400,891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을 작성하고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인건비·인쇄비, 자연과학분석 및 보존처리, 3D스캔 용역 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출 완료 즉시 관련 증빙서류를 문서로 제출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문화재청에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책임지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관리소는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2018.12.28.)<sup>1)</sup>하였다.

1) 2018.9.13. 선금 68,998,500원 지급 후, 2018.12.28. 남은 84,331,500원 지급

[표] 책임지출 확인서 중 책임지출내역

구 분		내 역	책임지출금액(원)
직접인건비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정리 및 보고서 작업 인건비	13,462,258
직접경비	위 탁 비	자연과학분석 및 보존처리 3D스캔 용역 등	7,938,633
	보고서간행비	보고서 인쇄비 등	8,000,000
	소 계		15,938,633
합 계			29,400,891

이와 별도로 관리소는 발굴 결과에 따른 유적정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시·발굴 추가 조사 관련 3D 스캔 용역’을 (합)◆◆과 계약(2019.1.1.~2019.3.31./9,400,000원) 하였는데, 스캔 대상이 동일하고, 시·발굴 추가 조사 용역 계약 상대방이 3D스캔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면, 별도의 3D 스캔 용역과 과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과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정·관리하여야 함에도 중복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위 두 용역의 과업을 살펴본 결과, 성과물의 활용목적이 달라 작업방법 또한 서로 다르나, 스캔이미지 축적 배열 등 작업 일부가 중복되고 있어, 후자 용역에서 중복되는 과업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전차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추진할 때 과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시·발굴 추가 조사 관련 3D 스캔 용역’에서 일부 중복되는 스캔이미지 축적 배열 작업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중복과업 해당 금액 2,415,000원)하는 변경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관사동 이전 건립사업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 공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2018년 당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는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의 업무 중 10억 원 이상 예산집행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설계비의 경우 공사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건설비(420목)에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편성지침에는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관리소는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한 직원관사 등 노후시설물들을 문화재 구역 외부로 이전 건립하고자 '관사동 시설물 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 시행계획을 수립(설계예산 24,000,000원)하였다.

이 때, 관리소는 추정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요율로 설계용역 대가를 산출하지 않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의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sup>1)</sup>하였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물로 기본설계 도면과 함께 공사비를 15.6억 원으로 산정한 공사비 계산서를 관리소에 제출하였다.

한편, 관리소는 위 용역 추진 당시 2019년도 예산요구 사업설명자료 작성 시에는 공사비를 16.6억 원으로 추정하여 '능제복원을 위한 관사동 이전 실시설계' 예산을 공사비 요율에 따라 113백만원으로 산출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2018.05.25.)하였다.

1) 21,120,000원/(주)○○○○○○○○○○/2018.04.02.~2018.07.30.

또한, 관리소는 기본계획 설계용역 결과 개략공사비가 15.6억원으로 산출되었음에도, '영릉 관사동 건립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설계예산 92,000,000원) 시에는 추정 공사비를 기본계획 설계용역 시의 개략공사비 15.6억원이나 예산요구 사업설명자료의 16.6억원과 달리 14억원으로 설정하면서 다시 설계대가를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출하였다가,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설계대가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요청하자 설계대가를 '공사비'에 대한 효율로 산정방법을 변경하였다.<sup>1)</sup>

그러나, 관리소는 위와 같이 영릉 관사동 건립사업의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확대기관장회의(2018.07.25.) 중 문화재청장에 '관사동 시설물 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완료 예정(21,120천원/2018.04.02.~ 2018.07.30.)이라는 사실과 향후계획을 구두 보고하였을 뿐, 공사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등 관사동 이전 건립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별도로 문화재청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관리소는 '영릉 관사동 이전 건립사업'의 공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공사비 예산이 협의 과정에서 달라지는 경우 건축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도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조치할 사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관사동 이전 건립사업의 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한 기본 결재를 득한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 당초 실시설계 예산을 실비정액가산식으로 92백만원을 산출하였는데, 공사비 효율로 재 산정 시에도 최종보고서 작성, 조감도 제작, 측량비, 지질조사비, 석면조사비, 자문회의비, 기타대행료 등의 추가업무비용을 계상하여 당초 산정 금액과 동일함 (세종대왕유적 관리소-573[2019.02.20.]호)

# 문 화 재 청

## 모 범 사 례

제 목 영릉 참도에 강화 석모도 박석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진정성 확보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영릉(英陵) 참도<sup>1)</sup>는 1970년대 보수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나, 발굴조사(2007년) 결과 현 참도 위치가 조선시대 유구와 다른 것이 확인되어,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참도를 본래 위치로 복원하는 것을 포함한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사업'(1단계 : 2014~2016년, 2단계 : 2017~2020년)을 추진하고 있다.

발굴된 참도 유구의 석재는 여주석이나 현재는 여주석을 채석할 수 없어, 복원 석재로 '자연석 박석'이 설계되어 있었으나, 관리소는 자문회의(2017.8.25.)를 통해 광화문 복원과 승례문 복구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강화 석모도 박석<sup>2)</sup>을 사용하는 안을 발굴, 문화재위원회 검토(2018.4.11.)를 거쳐 강화 석모도 박석을 참도 박석으로 공사 업체에 지급하기로 설계변경(2018.12.24.) 함으로써 자연석 구입비용 13,134,614원을 절감하였다.

강화 석모도 박석은 수도권 지역 궁궐과 왕릉에 약 16만장 이상 깔려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신하들이 석모도 박석을 공사에 사용토록 임금에게 건의한 대목이 확인되며, 『정조산릉도감의궤』에 황해도 해주와 강화부에서 박석을 천 입(立) 들여왔다고 기록되는 등<sup>3)</sup> 궁궐과 왕릉에 해당 석재가 두루 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리소가 강화 석모도 박석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석재 구입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문화재 보수·복원을 위한 원형 고증과 진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유사 사업 추진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1) 예전에 왕릉을 참배할 수 있도록 홍살문에서 왕릉 앞의 정자각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두었던 길(출처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 광화문 복원과 승례문 복구를 위하여 2008.6.3.부터 2011.10.31.까지 강화 석모도에서 화강암 368m<sup>3</sup>를 채석하였음(『현장에서 만난 문화재이야기 3』, 문화재청, 2013)

3)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이야기』, 문화재청, 2012

# 문 화 재 청

## 모 범 사 례

제 목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적극 운영으로 지역 문화유산 활성화에 기여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고 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는 2016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 체험행사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시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20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운영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결과

연도	일자	프로그램 명	장소	인원(명)
2016년	4. 27.	조선시대 전통놀이	영릉 재실 / 세종전	115
	5. 25.	세종대왕릉 초콜릿 체험		130
	6. 29.	과학기구 만들기		100
	7. 27.	과학기구 만들기		85
	8. 31.	한글명패 만들기		74
	9. 28.	한글명패 만들기		126
	10. 26.	세종대왕릉 초콜릿 체험		146
	소계			776
2017년	4. 26.	한글 활용 한지스탠드 만들기	영릉 재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	93
	5. 31.	전통악기 만들기 체험		102
	6. 28.	한글 에코백 만들기 체험		57
	7. 26.	한글도장 만들기 체험		111
	8. 31.	한글·석물모양 비누 만들기		74
	9. 27.	한글·석물모양 비누 만들기		128
	10. 25.	한글팔찌 만들기 체험		144
	소계			709
2018년	4. 25.	한글 활용 네온사인 조명 만들기	세종대왕역사문화관	65
	5. 30.	한글 부채 만들기 체험		78
	6. 27.	한글 티셔츠 만들기 체험		93
	7. 25.	한글 시계 만들기 체험		101
	8. 29.	십이지신 인형 만들기		89
	9. 26.	십이지신 인형 만들기		128
	10. 31.	한글 열쇠고리 체험		81
	소계			635
계			2,120	

관리소는 2016년에는 체험강사를 초빙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또한, 행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사전에 참가자들을 신청받은 후, 당일 현장 접수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리소는 ▲ 매년 7회에 걸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하고, ▲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 직원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공감을 확산함으로써, 유적 관리소의 지역 문화유산 활성화와 생활 속 문화유산 교육 실현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된다.